

제36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종합정보센터”를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산림청”을 “국무조정실, 산림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센터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를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센터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있어 그 세부 시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에 관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국무조정실 소관)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수립”을 “공동으로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8항 및 제9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1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9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 및 배출권 할당량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2조제10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3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0조제6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 법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
  -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 나.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관리
  - 다.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 라.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 마.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
  -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보유
- 아.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자.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자의 거래신고 수리
- 차.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설치·운영, 운영규정 승인 및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
- 카.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 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 파.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
- 하.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거.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에 따른 등록
- 너.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 이월·차입 승인 및 처리
- 더. 법 제29조에 따른 상쇄
- 러. 법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 관리
- 머.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권 소멸
- 버.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서. 법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연계업무
- 어.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
- 저.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
- 처.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
- 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처목까지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 티.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법 제30조에 따른 감축량 인증
- 나.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부문별 관장기관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무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을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에 각 소관 분야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을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무관청”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무관청의 감독”을 “감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주무관청이”를 “환경부장관이”로,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3호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를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1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무관청에”를 각각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관청에”를 각각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무관청에”를 각각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무관청은 제2항에”를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무관청”을 각각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무관청”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인증위원회”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무관청”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주무관청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관청”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본문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주무관청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검증 결과와 관련된 조사·연구

제4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와 관련된 자료의 분석 및 검토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와 관련된 비율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제49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제8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할당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할당계획으로 본다.

제5조(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목재·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개정이유

파리협정 체결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로 변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2016. 6.)하였는데,

개편 이후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감축정책 추진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부처 간 제도 집행상의 차이로 인하여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외부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업무는 현재와 같이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협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의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등)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2) 배출권 할당·조정·취소, 배출량 평가 및 인증,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관리,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예비분의 관리,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관리 및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차입,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할당대상업체 및 검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주무관청을 「저탄소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3) 외부사업 인증 및 외부사업의 배출량 인증의 주무관청은 계속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함.

나.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도입(제5조의2 신설)

- 1)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함.
- 2) 협의체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 배출량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